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중심으로—

2015. 2.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차

---

Chapter 1. 정책연구 추진개요	03
----------------------	----

---

Chapter 2. 사회적경제 육성 · 지원 현황 분석	12
--------------------------------	----

(1) 문헌 · 통계 등 자료분석	13
--------------------	----

(2) 정량 · 정성 등 실증분석	15
--------------------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25
--------------------	----

---

Chapter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34
-----------------------	----

---

# Chapter 1. 정책연구 추진개요

# 1. 연구의 개요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① 국회에서 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발의 중

②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내실화 추진” 발표(2015)

③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달체계 개편 추진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책재설계 및  
전달체계 개편

# 1. 연구의 개요

## (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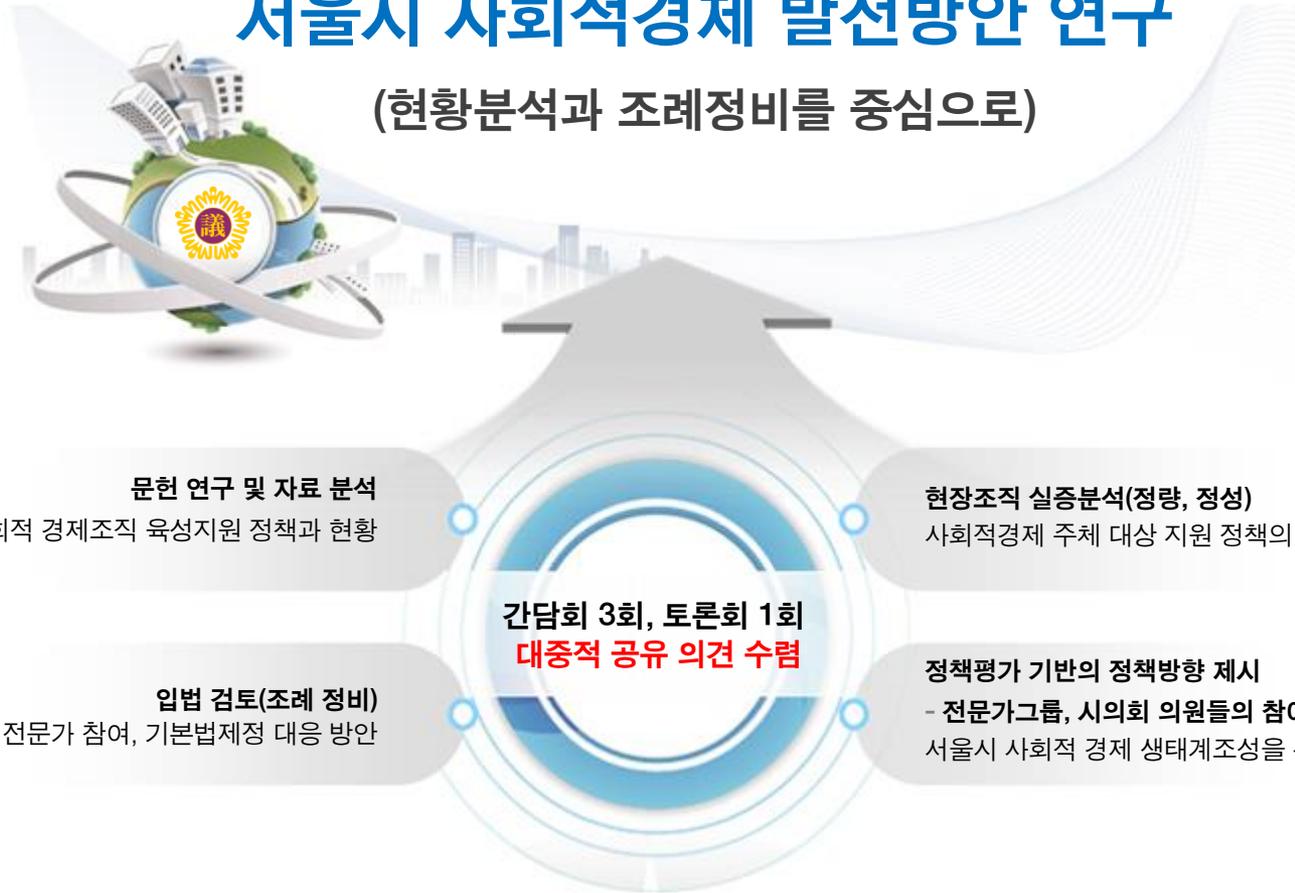


# 1. 연구의 개요

## (3) 연구체계

###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연구

(현황분석과 조례정비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개요 (배경, 목적, 체계, 일정)

## (5) 연구방법

### 1차 정성평가(인터뷰)

- 일시 : 12.5
-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 서울시 혁신기획관실
  -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차 정량평가(서베이)

- 일시 : 12.5~12.10
- 대상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전문기관 방문인터뷰

- 일시 : 12월 10일
- 장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참석자 : 최혁진 본부장 외2인

### 2차 정성평가(인터뷰)

- 일시 : 1.6~1.20
- 대상
  - 사회적경제 현장조직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 지원센터 등

### 2차 정량평가(서베이)

- 일시 : 1.5~1.22
- 대상
  - 사회적경제 현장조직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 지원센터, 협의체 등

###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12.12
- 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 참석자
  - 김현아 의원
  - 김설희 팀장(서울시 사회적경제과)
  - 이미연 사무총장(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 신경희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 송남철 팀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정책연구진(오형민 외 5인)

# 1. 연구의 개요

## (6) 전문가 토론회 및 중간보고회

- 전문가 토론회(2014.12.12)



- 중간보고회(2014. 12.19)



- 시의원 간담회(2015.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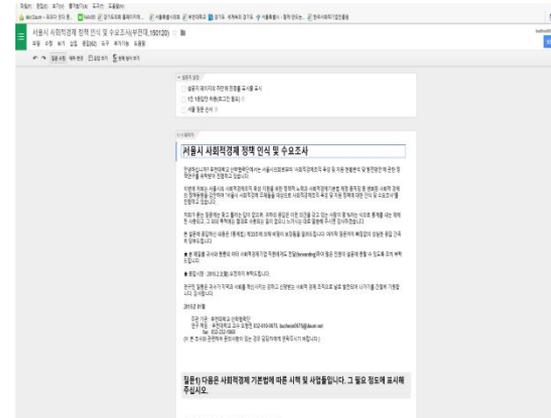


# 1. 연구의 개요

## ● 1차 정성조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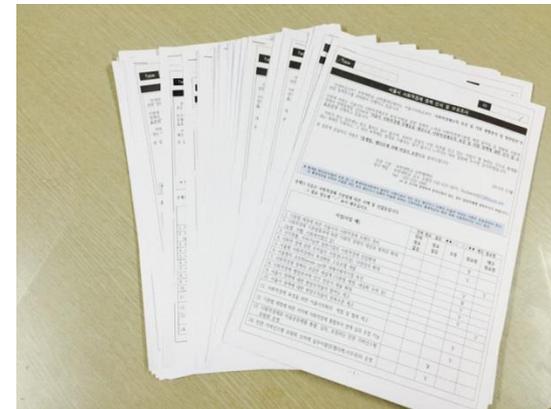
## ● 1차 정량조사 (서베이)



## ● 2차 정성조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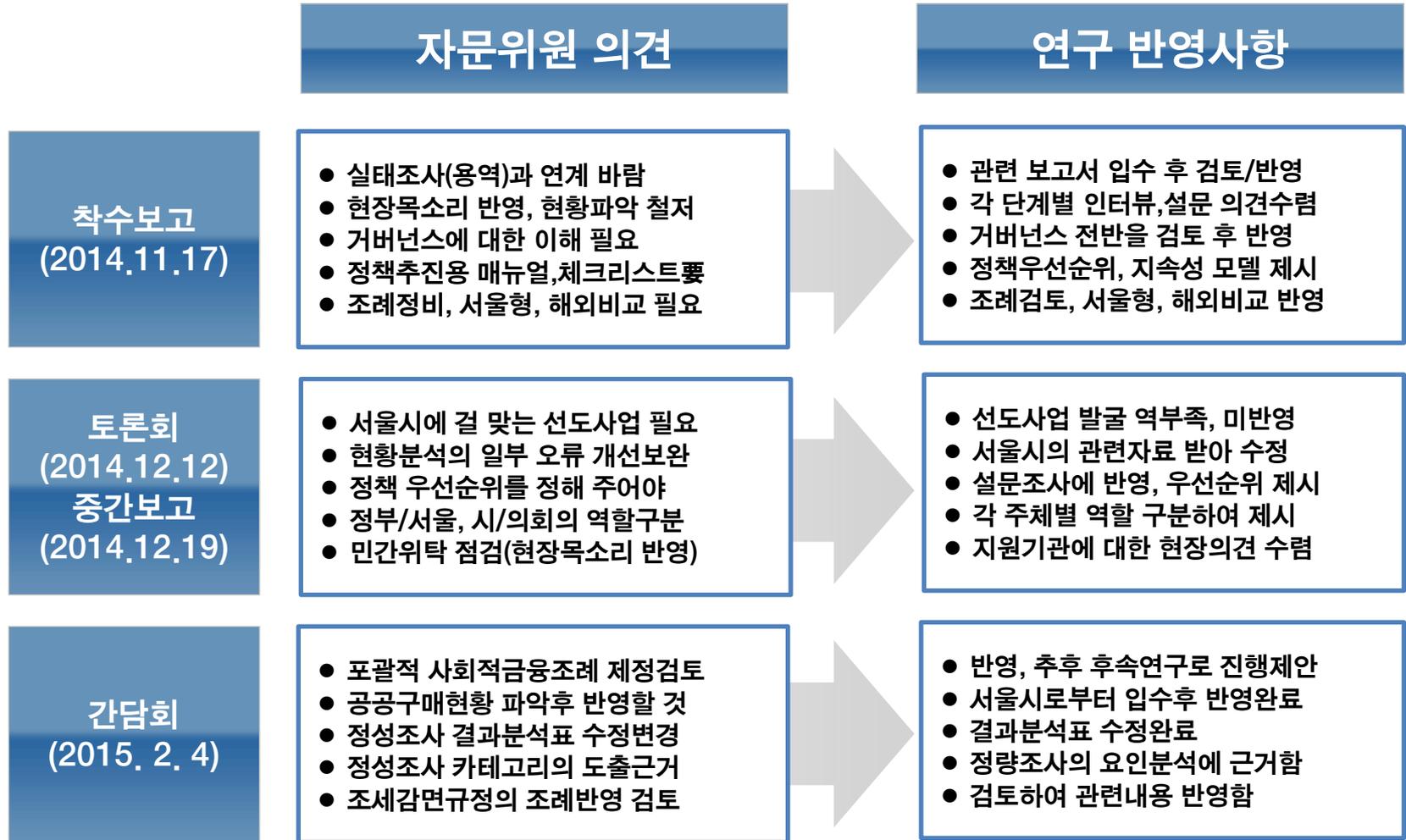


## ● 2차 정량조사 (서베이)



# 1. 연구의 개요

## (7) 단계별 의견 반영사항



# Chapter 2. 사회적경제 육성 · 지원 현황 분석

# 1. 자료분석

## (1) 주요현황 분석

### ▶ 1)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비전과 체계

- 2030년 GRDP에서의 사회적경제 비중 7%, 고용률 10% 제시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후 종합계획 수립 조정 해야
- ※ 김혜원(2008) 국내 사회적경제 비중 6.8%, 고용률 7.3% 수준(기본법에 포함된 영역확대시 추정)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 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육성현황

- ✓ **사회적기업** - 육성효과 미비하여 서울형 중단
- ✓ **마을기업** - 자생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  
- 경영성과 지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데이터 수집 및 운영관리가 필요함
- ✓ **협동조합** -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 현장 협동조합 조직들의 사업성과 등  
- 데이터 관리가 아직 미진한 상황

### ▶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체계

- **보완이 필요한 공통지원정책:**  
인재육성, 판로확대, 공유공간 시설확충, 경원지원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1. 자료분석

## (2) 성과 및 진단

### ▶ 1) 현장조직의 재무적 성과측면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전체적으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재무성과 현황 관리가 미비한 상태

### ▶ 2) 미래 육성전략 측면

-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성장과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영시스템 업그레이드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 ▶ 3) 목표달성을 위한 연결전략측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업체계)

- 고용노동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안정화 되어 있지 못하고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영정보 관리가 구조적이지 못한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 2. 실증분석

(1) 정성평가(인터뷰) ● 착수보고시 현장목소리 자료(2014.11.10)

# “현장목소리”

### 기초지원센터

서울시센터가 생태계조성 사업을 주도하려고 하니  
기본법제정 계기로 강력한 물리적 통합,재설계 없으면 한지붕 3가족  
물고기들을 한데 몰아놓되 경계를 주고 놓게 하는 방식이 필요

### 연구기관

서울시 사회적경제 영역이 각 센터별로 찢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특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실험이 필요  
이론과 실제의 선순환을 위한 연구자들의 역할 필요

### 협동조합전문기관

- ✓ 중간조직에 줄 서지 않으면 교육,연구,컨설팅 등 할 수 없으니
- ✓ 세대간 칸막이, 조직간 칸막이, 정치적 칸막이 많아 네트워크를 하고 통합해도 시너지가 나지 않아

### 민간투자금융기관

- ✓ 보조금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이 낮아 지속성이 없다
- ✓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평가 회피, 성과과장 등, 의식의 전환 필요

### 사회적기업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상호교차지점이 많은데 담당부서와지원센터가 각기 분리되어 통합지원 한계

## 2. 실증분석

### ● 현장인터뷰 내용(2015.1.26 ~ 2.2)

#### 잘된점

- ✓ 기초 보편적인 교육은 잘 구성되어 있음 (1)
- ✓ 교육 강화를 위해 폭넓게 시도하고 있음 (1)
- ✓ 서울시도 전환을 위해 노력중임 (1)

#### 문제점

- ✓ “머리 채우기 동원 교육” 너무 많고 몰려 똑같은 이야기 반복(지원센터) (10)
- ✓ 너무 많고 도움 안되어, 초등학교 수준(협의회)(5)
- ✓ 실질적인 도움(세무, 회계, 노무,마케팅, 업무지원 등) 아닌 보편적인 교육 반복 (7)
- ✓ 제조업 교육 필요 없어 “현장조직 이해 못해” (3)

## 연구 · 교육

#### 요구사항

- ✓ “세무교육 및 회계, 마케팅 교육이 현실적” (5)
- ✓ 교육 · 연구 사업 비용 전환하여 홍보 및 실질적인 지원 나서야 (5)
- ✓ 제조업 교육 보다 공공 판로 폭 넓혀야 (3)
- ✓ 기술전수 교육(양성)없어, 의지 있으나 방법 몰라 (1)

#### 시사점

- ✓ 출장형 지원: 세무 장부작성 교육,회계, 행정 지원
- ✓ 마케팅 실무 강화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지
- ✓ 교육에 기초, 중급, 심화 등 단계별 교육과 실질적 교육 강화
- ✓ 기술 전수 양성교육 신설, 교육생 지원 등 검토

## 2. 실증분석

### ● 현장인터뷰 내용(2015.1.26 ~ 2.2)

#### 잘된점

- ✓ 서울시 한시적 장터 도움 (1)
- ✓ 서울 시도 파악하여 개선을 하려고 노력중임 (1)
- ✓ 다양한 공모를 통해 지원에 노력하고 있음 (1)

#### 문제점

- ✓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획력 없어 역부족 (4)
- ✓ 제안 공모 혜택자 한 곳으로 집중 되어 (3)

### 판로 · 컨설팅

#### 요구사항

- ✓ 사업의 조연과 기획력(지원) 컨설팅 집중 지원(4)
- ✓ “기획업무 지원과 투명한 공모사업 선정해야 협의체, 연합회도 참여 가능” (2)
- ✓ “탁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소리 반영 모색
- ✓ 공공 판로 전용 사이트 개설, 컨설팅 1:1 맞춤형 지원 개설 (3)

#### 시사점

- ✓ 공모 평가자에 현장 전문가 참여 및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강화
- ✓ 평가자의 투명성과 도덕성 고려 선정, 공정성 강화
- ✓ 기초단위 구지자체 중심 지원 강화하여 협의체, 연합회 지원 모색
- ✓ 현장조직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 2. 실증분석

### ● 현장인터뷰 내용(2015.1.26 ~ 2.2)

#### 잘된점

- ✓ 대국민 사회적경제 홍보에 노력 (2)
- ✓ 이벤트 등을 통해 공감대를 전개를 위해 시도하고 있음 (1)
- ✓ 홍보강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으며 시도중임(1)

#### 문제점

- ✓ 각종 이벤트 긍정적이나 잘 알리지 않아 사장 아쉬워 (2)
- ✓ 건의하려고 전화하면 통화하기 힘들고 찾아가면 예산 없다고 무시하기 일쑤 (2)
- ✓ 협동조합 늘리기(실적쌓기)에 바쁜 서울시 공무원부터 협동조합 홍보하고 이용해야 (2)

## 홍보 · 이벤트

#### 요구사항

- ✓ 협동조합 설립시 방문지원 안되면 정보 창구 만들어 지원해야 (4)
- ✓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홍보 홈페이지 지원사업 (교육만 줄여도 통합시스템 구축 바로 가능) (4)

#### 시사점

- ✓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홈페이지 구축하여 활성화 모색 “기초단위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상품 검색 어려워, 구매 곤란”
- ✓ 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활동, 국민적 공감대 전개

## 2. 실증분석

### ● 현장인터뷰 내용(2015.1.26 ~ 2.2)

#### 잘된점

- ✓ “지원센터와 협의회는 선방” 하고 있어  
(지원센터 문제는 과부하 인원 더 늘려야 해결), “인력 확보 어려움은 일 대비 급여 문제, 전문 인력들 스스로 찾아야 비전 있어” (1)
- ✓ 지원센터, 허브센터 등 무상임대 입주 지원(3)
- ✓ 인건비 지원 (3)

#### 문제점

- ✓ 지원 받으려고 중복 지원업체 많아(사기+협동)(2)
- ✓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는 노력 없어(7)
- ✓ 지원센터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의 창의성 훼손
- ✓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평가하고 정형화된 정책에 “현장이 적응하고 이행하도록 강요” (2)
- ✓ “조성사업단의 역할 애매, 관리 감독해야” (1)

## 거버넌스

#### 요구사항

- ✓ “공무원 사경조직 늘리기(실적) 벗어나야” (5)
- ✓ 우수기업, 혁신기업 지정만 말고 실질적인 집중 지원해야 (2)
- ✓ 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안 세워야 (1)  
(책임규명, 성과위주 및 관리주의 벗어나야)
- ✓ “시의회에 간절하게 지원센터에 대한 통제를 요청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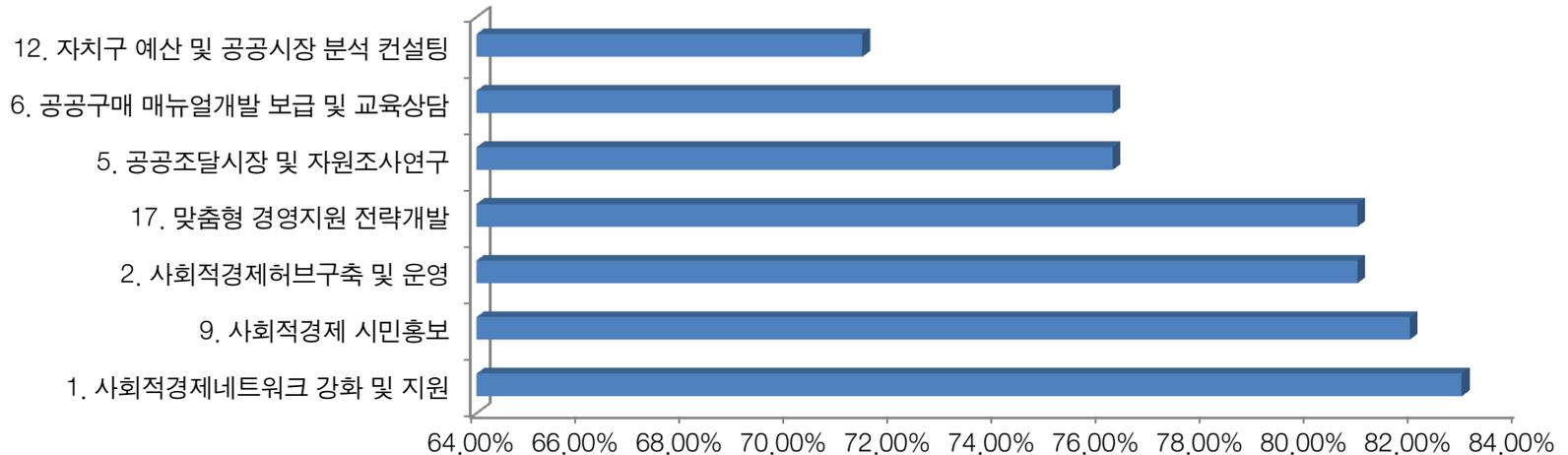
#### 시사점

- ✓ 기초단위 자치구 역할 강화와 지원 모색
- ✓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진입장벽 완화, 지속 가능하게 판로 개척과 컨설팅 지원
- ✓ 지역 및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킹 활성화 강화
- ✓ 시민-제3섹터-공공 함께 참여하는 일상적 거버넌스 구조 (상설위원회)

## 2. 실증분석

### (2) 정량평가(설문지)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우선순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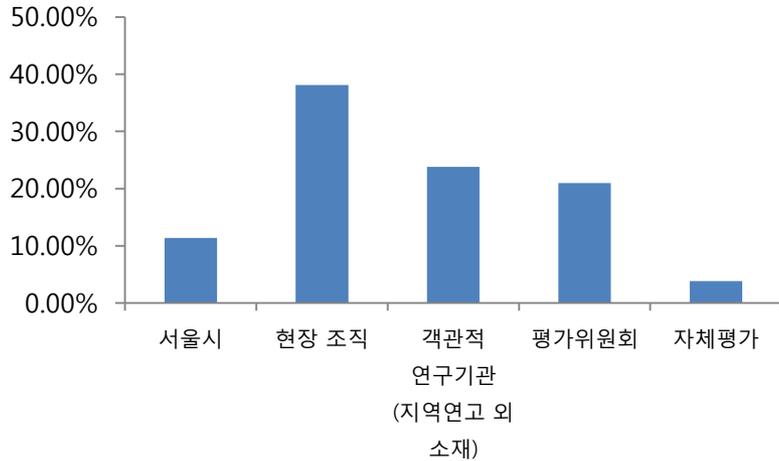
####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사업 중 시급 정도 분석

맞춤형 경영지원 전략개발	1순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2순위
공공조달시장 및 자원조사연구	3순위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4순위
자치구 예산 및 공공시장 분석 컨설팅	5순위
사회적경제 허브구축 및 운영	5순위
공공구매 매뉴얼 개발 보급 및 교육상담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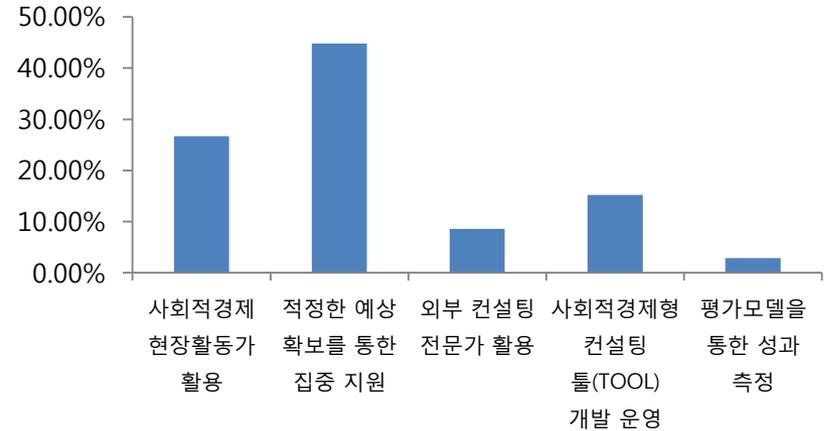
## 2. 실증분석

### (2) 정량평가(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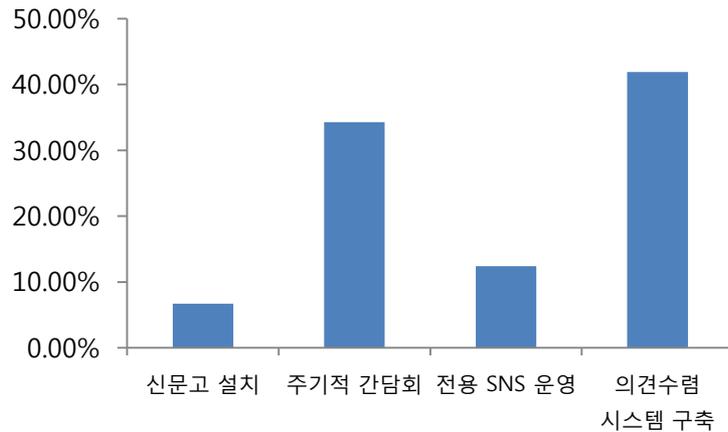
#### ● 사회적경제센터 평가주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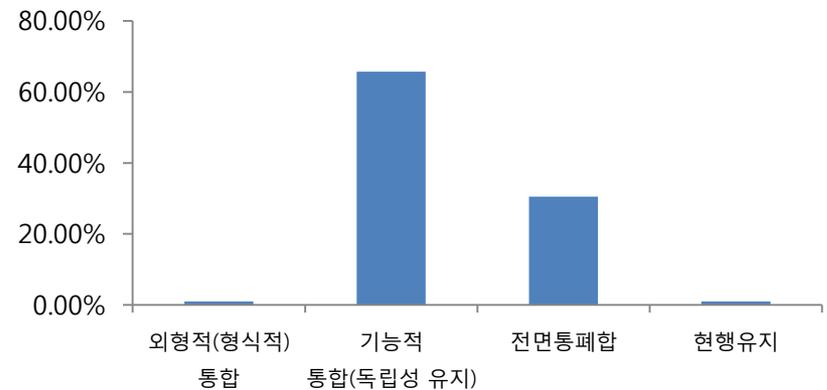
#### ● 현장조직의 컨설팅 지원 방안 분석



#### ● 현장조직의 의견 수렴 방안 분석



#### ● 각 부문별 지원센터 통합 방식 분석



## 2. 실증분석

### (3) 정성과 정량 평가의 공통점

#### 정량평가 결과

- 사회적기본법 시책 및 사업
  - 필요 정도 :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업성(수익성) · 다양성의 확대, 현장조직들의 참여도,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협력
  - 시급 정도 :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업성(수익성) · 다양성의 확대, 사회적경제 각 지원 센터들간의 연계 및 통합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사업
  - 우선 순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판로와 컨설팅 지원으로 현장 조직
  - 시급 정도 : 맞춤형 경영지원 전략개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공공조달시장 및 자원조사연구와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 정성평가 결과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지원방법,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지원방법
  - 공공판로와 컨설팅 지원
- 서울시의회의 역할
  - 조례 제정 시 새로운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 행정조직(특히 중간조직) 감시와 견제활동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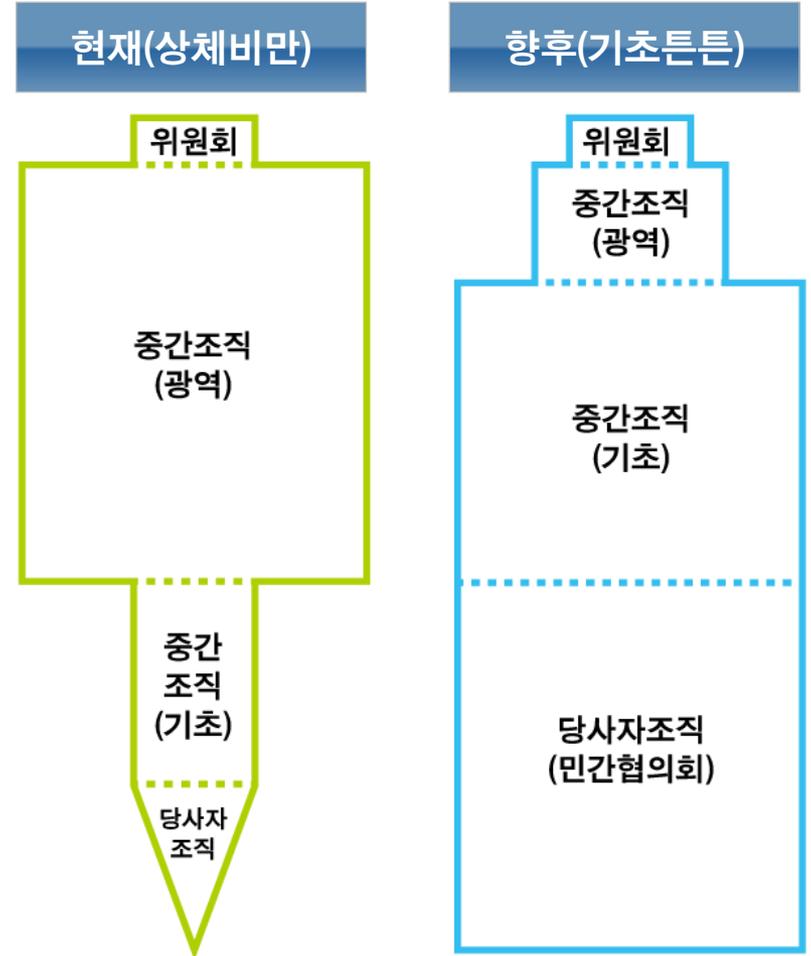
#### 공통점 및 시사점

- 컨설팅 지원으로 적절한 방안 : 적절한 예상 확보를 통한 집중 지원,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전문가)참여
- 현장조직이 가장 필요, 우선, 시급하게 여기는 지원방안 : 판로컨설팅 (맞춤형 경영지원 전략개발과 공공조달 지원)
- 서울시의회의 역할 및 협력: 조례 제정 시 새로운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 2. 실증분석

### (3) 정성과 정량 평가의 공통점

구 분			예산 (인원)
육성위원회(희망경제위원회)			-
중간 조직 (지원센터)	광역	- 서울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 서울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75억 (54명)
	기초	- 자치구 민관협력 중간조직 (총 9개소)	18억 (25명)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총 16개)	20억 (54명)
	민간 협의회	- 사회적기업 협의회(4) - 협동조합협의회(3) - 마을기업연합회준비위(1) - 지역자활센터협의회(5)	13명
(당사자 조직)	기초 (23)	- 사회적경제협의회 9개소 - 사회적기업협의회 8개소 - 협동조합협의회 6개소	파악 불가



\* 영국 런던의 벤치마킹 사례 : 광역인 런던시가 아닌 자치구가 주관, 하향식이 아니고 구가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 (by 김현아 의원 2015년 1월 사회적경제기관 방문 사례 연구)

## 2. 실증분석

### (3) 정성과 정량 평가의 공통점

#### 소 결

-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에는 다소 긍정적이거나 - 중간조직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 ✓ 중간조직은 관료적인 성향이 강하고 지원조직이기 보다는 상위 조직이라 평가
- ✓ 중간조직은 본질의 목적으로 돌아가 현장조직 지원에 충실해야 할 것
- ✓ 현장조직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
- ✓ 정례적인 서비스 교육을 통해 본질적 지원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 중간조직의 동기부여 시스템 부재도 문제점으로 대두, 신분 보장해야 할 것
- ✓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통해 보상하고 부족한 평가에 냉철한 후속 조치도 해야 할 것
- ✓ 현장 조직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 낮추고 개선해야 할 것
- ✓ 중간조직은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 ✓ 공공판로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 I.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배경	입법목적	기본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없는 저성장</li> <li>• 경제적 양극화 심화</li> <li>• 소득불평등지수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 2위 (2014년 OECD 31개국 중)</li> <li>•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심각한 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토대 마련</li> <li>• 사회적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li> <li>•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기여</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승민 의원안 (2014.4.30)</li> <li>2. 신계륜 의원안 (2014.10.13)</li> <li>3. 박원석 의원안 (2014.11.11.)</li> </ol> <p>※ 다소 차이가 있으나 80% 이상은 대동소이함.</p>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I. 외국의 입법례

입법배경	입법 예(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적인 양극화와 내수경제의 악화</li><li>• 2008년 국제 금융위기</li><li>• 이러한 문제점 극복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 활발(2011년 이후)</li><li>•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고민</li></ul>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스페인 - 사회적경제법, 2011.5</li><li>2. 에콰도르 - 서민연대경제금융법, 2011. 5</li><li>3. 포르투갈 -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2013.3</li><li>4. 캐나다 퀘벡- 사회경제법, 2013.10</li><li>5. 프랑스 -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 2013.11</li></ol>

### 3. 법률·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I. 외국의 입법례

분석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에 비추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 대두(OECD 평균 미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공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별도의 조직 신설 필요성 대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금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공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적금융 관련 조항 신설 필요성 대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음(공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마련 필요함</li></ul>

### 3. 법률·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II.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시(광역)	서울시(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5.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9.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4.3.2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시행 2014.5.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시행 2014.5.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9개)</li> </ul>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II. 사회적경제 기본법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

##### 시사점

-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함
- ◎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30일 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금융을 제도화 하고 있음
- ◎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를 제도화 하고 있음
- ◎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별도의 조례에서 언급하기 보다는 “사회적금융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V.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비추어 본 관련 서울시 조례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방안
현재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보다 서울시의 기본조례가 앞서 제정됨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
야당안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대한 언급이 서울시 조례에는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 조례에서도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대한 조항 신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야당안 5년, 여당안 4년, 서울시 5년)이 상이함	기본법과 조례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조정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IV.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비추어 본 관련 서울시 조례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방안
여·야당안 모두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5%로 명시한 반면, 조례에는 구체적 수치가 없음	조례와 기본법안이 뒤바뀐 형세, 조례도 기본법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수치 명시
여·야당안 모두 사회적금융과 기금에 관련한 구체적 법조문 구비한 반면, 조례는 구체성이 미비	자체적으로 사회적금융관련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통합조례 제정
여·야당안 모두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한 반면,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	조세감면조치를 규정한 관련 세법 반영 조례 규정 신설

### 3. 법률 · 조례 등 입법검토

-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서울시 관련 조례 검토

#### ▶ V. 소결

국회차원	서울시차원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함으로써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	“사회적금융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따로 제정해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회적 경제 관련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관련 세법 개정 촉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구성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직접적 관련있는 법률 개정 촉구(예,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서울시 의회 내에 사회적경제상설위원회의 신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논의(예, 국세[8] : 지방세[2])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의회 통과 필요

# Chapter 3.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종합)

## 자료분석

- **비전과 추진체계 검토**
  - 장기목표 도달의 구체화, 현실화
- **유형별 육성현황 검토**
  - 지속성, 자생력 등 지표관리
  - 종합적 데이터 관리 및 점검
  - 균형성과 : 사회적 vs 경제적
- **지원기관, 현장 피로감 누적**
  - 행정지원 vs 현장지원
  - 예산, 인력 자원배분 기준 마련 (광역기능 비대 완화방안 검토)
- **미래육성전략의 수립 필요**
  - 서울형의 개념 정립 및 모델
  - 서울시 다운 선도 전략 개발
- **중앙 및 기초와 정책연계 강화**
  - 정보공유, 역할분담, 협업강화
  - 기본법 제정 후속대응 점검

## 실증분석

- **시 : 정책방향 설계, 조정**
  - 현장위주 자원배분 강화
  - 광역/기초간 역할분담 (광역 : 기획, 조정, 배분) (기초 : 집행, 연계, 지원)
  - 간접지원 강화 기조유지
  -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 비전, 상황실 기능확보
- **센터 : 역할선명 제고**
  - 지원 및 서비스 마인드
  - 현장 목소리 적극 수렴
  - 고용안정, 동기부여 강화
  - 현장/전문가 개방성 확대
  - 실질적 경영지원을 강화
- **의회 : 견제와 협력 강화**
  - 정례간담 소통, 모니터링
  - 조례 제 개정 등 입법정비
- **현장 : 연대/책임 강화**
  - 윤리성 강화(공시제 참여)
  - 자기 주도성, 지속성, 연대

## 입법검토

### 〈서울시 차원〉

- **사회적 금융 조례 제개정 검토**
    - 사회적 금융 조례제정
    - SIB 관련조례의 개정
  - **관련 조직개편 조례 개정검토**
    - 사회적 경제 영역확대 대응 신설
    - or 연계 통합시 정책협의기구 설치
  - **별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심의, 의결, 조정, 계획수립
- ⇒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의뢰 진행중

### 〈정부 차원〉

- 조세감면 혜택 위한 관련세법 개정 촉구
- 지자체 재정관련 법률개정 촉구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 세수확보 방안 논의 (국세, 지방세)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의뢰서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서

수 신 : 의회사무처장  
참 조 : 입법담당관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 및 입안을 의뢰합니다.

### 1. 조 례 명 :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조세감면 조례

#### 2. 제안이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개정 필요성 등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공통된 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인 조치로서의 세제혜택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세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 조례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의회가 관련세법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함.
- 예를 들어 에피도로 서민연대경제금융(2011.5)법 제139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단체가 그 구성원들과 함께 그 목적이 되는 고유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분야는 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포르투갈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2013.3) 제11조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기관은 해당 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에 정해진 납세 지위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납세지위의 혜택을 적용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해외의 법제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를 좋은 활용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3. 제정 방향

- 서울특별시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검토 필요.
- 국내 사회적금융조직 육성뿐만 아니라 해외 사회적금융조직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영국 사례만 보더라도 국내금융자본 보다는 해외장기금융자본유치 및 육성 덕분에 영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기업의 주체가 되어 자생적으로 발전한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금융발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 하에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창출만을 목표로 한 사

※ 의뢰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 법률의 위임없는 주인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시장·교육감 권한 침해
- 자치구 소관사무에 해당       많은 예산 소요(예산비용 연평균 5억원이상, 인시적 경비 총 10억원이상)
- 서울시에 유사 조례나 제도 존재

의뢰위원회·의원실      담당자 : 기획경제위원회 발대원 입법조사관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2015년 02월 25일  
의뢰 위원회·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 (인)

자치법규의 검토 및 입안을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의뢰서

수 신 : 의회사무처장  
참 조 : 입법담당관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 및 입안을 의뢰합니다.

### 1. 조 례 명 : 사회적금융 육성 조례

#### 2. 제안이유

##### 2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서울특별시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법의 근간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반면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지만, 법과 조례간의 불일치와 충돌 혹은 조례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유승민 의원안] 제17조 내지 20조와 [신계륜 의원안] 제26조 내지 제32조에서 구체적인 법조문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경우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조항이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3항에서 사회적금융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30일 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금융을 제도화 하고 있다. 특히 본 조례 제2조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를 제도화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모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조성이 어려운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의뢰내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 법률의 위임없는 주인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시장·교육감 권한 침해
- 자치구 소관사무에 해당       많은 예산 소요(예산비용 연평균 5억원이상, 인시적 경비 총 10억원이상)
- 서울시에 유사 조례나 제도 존재

의뢰위원회·의원실      담당자 : 기획경제위원회 발대원 입법조사관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2015년 02월 25일  
의뢰 위원회·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 (인)

자치법규의 검토 및 입안을 의뢰하실 때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